

2000년도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

(의안번호 제596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	: 1999. 11. 19	고 성 군 수
나. 회 부 일 자	: 1999. 11. 19	
다. 상 정 일 자	: 1999. 11. 26	산업건설위원회 상정
라. 의 결 일 자	: 1999. 11. 27	산업건설위원회 의결

2. 제안이유

- 고성군재해대책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사전점검과 정비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여 예방위주의 방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.

3. 주요골자

- 기금조성
 - '97 ~ '99 총 기금조성액 : 178,937,605원
 - '97 ~ '99 법정 기금조성액 : 170,500,000원
 - '97 ~ '99 기금 이자수입 : 8,437,605원
 - 2000년 법정기금 예산액 : 66,147,000원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년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되어있음.

- 본 기금은 1997년부터 적립하여 이자를 포함한 총액이 2억45,084,605원으로서 2000년도의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 대로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각종 재해에 대비하여 예방위주의 방재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승인함이 타당할 것이라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97년도 기금은 높은 이율의 정기에탁을 하지 않고 이율 7%의 낮은 예탁으로 하였는지
- 답 : 기금의 운용관리규정에 50%는 일반예탁 50%는 이율이 높은 기업금전신탁으로 규정함으로 97년 기탁금인 평균이율이 낮은 편임.
- 문 : 각종 재해는 예비비로 집행하는데 굳이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가
- 답 : 1996년도에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가 제정되어 기금을 조성토록 되어 있으므로 조성한 것임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1999. 11. 27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